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071호
- 나. 발 의 자 : 이병도 의원(찬성자 30명)
- 다. 발 의 일 : 2023년 8월 14일
- 라. 회 부 일 : 2023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유니버설디자인의 확대와 체계적 적용을 위해 공공주택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공공주택을 포함함(안 제7조제5항)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공간, 시설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에 유니버설디자인의 확대와 체계적 적용을 위해 ‘공공주택’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간·시설 등에 적용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u>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u>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범위)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u> -----

나. 검토 내용

(1) 관련 법에서의 규정사항

- 현행 조례 제7조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를 ‘건축물, 공공공간, 공적공간, 도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시설물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모든 도시공간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라 '23.3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 적용지침")'이 새롭게 수립되어 시행중이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공공주택’을 신규 추가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를 조례 상에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간·시설 등에 적용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또는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등
2. **도로**(차도·자전거도·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
5.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가로, 공원, 시설, 건축물, 그 밖에 일반 시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제시
2. 모든 시민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의 제시
3. 모든 시민이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내용 제시
4. 삭제 <2021.7.20>
5. 삭제 <2021.7.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 외에도 세부유형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현행 조례 제2조는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및 “시민”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 “도시 내 모든 사람”,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하는 등 조례의 수혜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의 목적 또한 “모든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과 목적 모두 포괄적이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에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한다

-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범위, 원칙, 특징, 구성 등의 내용을 정립하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인 ‘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2017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이하 ‘통합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 공공부문의 유니버설디자인 의무적용을 강화하고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개정(2021.7.20. 시행.)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준수¹⁾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도, 공원, 공공건축물, 교통시설’ 조성 시 통합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조례상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는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사업별(도로, 공원, 건축물)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부서가 제출한 점검표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있음

1)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1조(지침 등의 준수) ①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2회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하나의 부서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심의 전 유니버설디자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별표1.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 〉

구분	심의대상	비고
보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2호의 도로 중 보도가 포함된 도로 또는 그 부속물의 신설, 확장, 개량, 보수 등에 관한 사항(단, '부속물'의 경우 설치방법 및 배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디자인정책담당관 소관)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과 소관)
건축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업무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건축기획과 소관)
교통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2조제3호가목의 버스터미널·정류소 및 나목부터 마목의 시설(표지판·안내사인 등 그에 부가된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디자인정책담당관 소관)

- 2023년 서울공공주택을 공급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개발·수립한 '공공주택 적용지침'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해 누구나 누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제공을 목표로, 입주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제시함
- '공공주택 적용지침'에서의 공간적 적용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2)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사용자 특성에 따라 노인(건강한 노인과 허약한

2)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노인을 포함), 장애인(이동, 감각, 소통, 정신 및 지적 장애 등), 어린이,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함

- 현행 조례 제7조제1호의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³⁾에 따른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로 정의되어있는 바, 건축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볼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공공주택’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통합가이드라인’ 외에 별도로 ‘공공주택 적용지침’이 신규로 개발됨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의 확대와 체계적 적용을 위해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을 추가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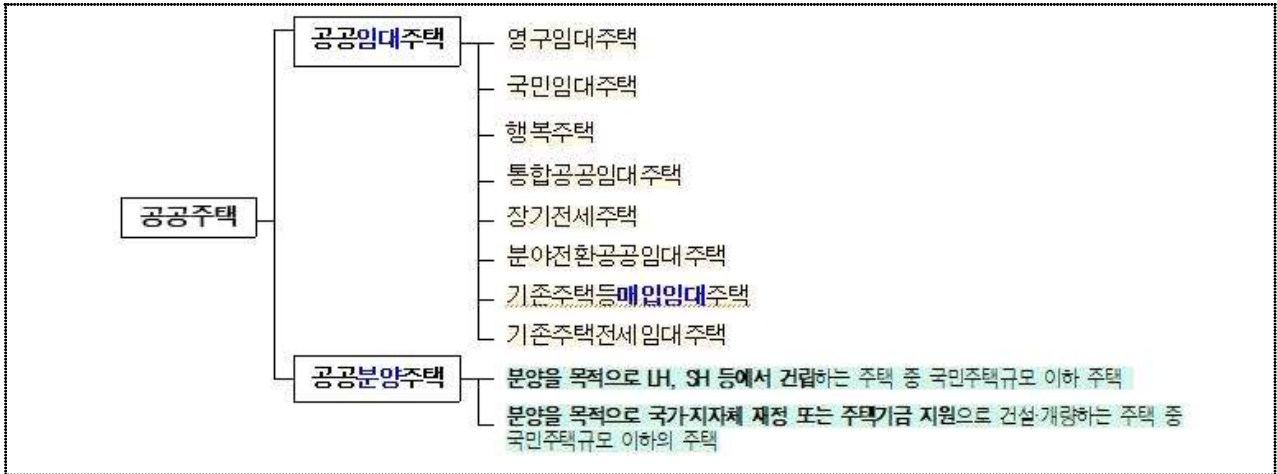
(2)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주택 적용 검토

-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있음

3)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재 서울시는 ‘공공주택’ 건설시 「공공주택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공공주택 적용지침’은 서울공공주택을 공급하는 SH공사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개발·수립한 지침으로, 현재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적용지침’을 ‘의무사항’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은 공간유형별 관련 법령 상 ‘의무사항’과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권장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의 준수는 지침 내 모든 사항을 의무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되 사업성격(건설, 매입 등)에 따라 여건상 적용가능한 ‘권장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침 등의 준수를 규정하는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의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 중 건축에 해당되는 사항⁴⁾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

4)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제11조 별표1. 건축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 (건축)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업무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고 있으나 '공공주택'은 이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음

- 유니버설디자인 의무적용을 강화하여 '공공주택 적용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추후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에 '공공주택'을 추가하는 등 제도상의 의무사항 적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 제11조(지침 등의 준수) ①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2회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하나의 부서에 제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심의 전 유니버설디자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에 '공공주택'을 명시하여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 수립된 '공공주택 적용지침'을 적용함과 동시에 조례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라 현재도 '공공주택'이 넓은 범위에서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상 명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음
- 현행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주택건설시 유니버설디자인 의무적용을 강화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에 '공공주택'을 추가하는 등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적용받는 개별 조례에 유니버설디자인 적

용을 명시한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서번호

2023081100000022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적용범위) 제5호에 공공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안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상, 서울시 각종 사업에 이미 유니버설디자인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